

5. 不動產所有權 移轉登記等에 關한 特別措置法中 改正法律

法律 第4,586號 1993. 12. 10
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시지역(인구 50만이상의 시는 제외 한다)의 농지·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 당 6만500원이하의 전 토지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
②(지가의 적용기준)제4조제2호의 지가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한다.

□ 개정이유 □

이 법은 1993년 1월 1일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실제와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바, 현재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읍·면의 경우에는 모든 토지와 건물로 되어 있지만, 시지역의 경우에는 농지와 임야만이 적용대상이 되고, 대지 등 그 밖의 토지는 제외되어 있으므로, 시지역의 외곽에 있는 대지등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실제와 달라 노후 건물의 증개축이 곤란하고, 인근 읍면지역에 비하여 공시지가가 낮아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일부 확대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인구 50미만인 시지역의 경우에도 개별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(평당 20만원)이하인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함.

〈법제처 제공〉

우리집 쓰레기가 우리집 의식수준